

영등포구의회
제130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2007. 9. 5.



行 政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■ 개정이유

- 구민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지역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, 교육현장과 연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,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’ 정비규정에 맞춰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.

■ 주요내용

- 구 교육시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‘교원, 학부모 등으로 모니터단을 구성할 수 있고, 교육현안사항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’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조항 신설(안 제5조)

- 위원의 해촉사유로 ‘기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’ 를 ‘위원의 사퇴, 사망, 전보, 퇴직 등 해촉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10조 제3호)
- 실비보상 규정에 있어 ‘본 협의회 활동 및 운영에 관한 경비는’ 을 ‘이 협의회와 산하 운영위원회 등의 활동과 운영에 따른 경비는’ 으로 개정하여 협의회 산하 단체들의 활동 활성화 도모(안 제12조)

검토의견

- 동 조례는 지난 2006년3월9일 제정되어 교육발전 협의회는 위원 40명이내로 구성, 연2회 개최하고, 운영위원회는 위원수 10명이내로 구성하여 분기1회 개최하여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이번 개정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창구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교육계와 학부모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활용하기위해, 동 조례 안 3조 협의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을 제한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.

본 조례의 안 5조 제1항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모니터단을 구성코자 했으며,

안 제5조 제3항과 4항은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교원,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구체화했습니다.

그밖에 안 제10조는 행정처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시했으며,

안 제3조 제1항, 안 제4조 제2항, 안 제10조 제1호 등은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’ 정비규정에 맞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 입법형식에 부합하고 개정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참고로 타 자치단체에 ‘교육발전협의회’의 조례가 설치된 예로 서울시 관악구, 서울시 성동구, 충청북도, 부산영도구 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7. 9. 5.

보고자 : 김 병 옥

- 붙임 : 1. 관계법령
2. 타 자치단체 조례와의 비교표

관 계 법 령

■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개정 1995.12.29, 1999.2.8>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. 유아원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
제15조(조례)

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「교육발전협의회」 타 자치단체 조례와의 비교

구 분	영등포구	관악구	성동구	충청북도	부산 영도구
기 구	협의회와 운영위원회 (2006.3제정)	협의회와 분과위원회 (2005.9.30)	협의회 (2006.10.4)	협의회와 실무위원회 (2006.11.17)	협의회와 분과위원회 (2007.3.9)
구 성	의 장 : 1인 부위원장 : 1인 위 원 : 40인 이내	의 장 : 1인 부위원장 : 1인 위 원 : 65인 이내	위원장 : 1인 부위원장 : 1인 위원 : 15인 이내	회장 : 1인 위원 : 30인 이내	회 장 : 1인 부회장 : 1인 회원 : 30인 내외
임 기	2년 연임가능	2년 연임가능	2년 연임가능	2년 연임가능	2년 연임가능
회의운영	· 협의회 - 연2회 · 운영위원회 - 분기1회	· 협의회 - 반기1회 · 분과위원회 - 필요시	· 협의회 - 반기 1회	· 협의회 - 연1회	· 협의회 - 반기 1회
고 문	약간명	없음	없음	5명 이내	없음
간 사	업무담당과장	기획예산과장	담당 과장	기 획 관	교육업무담당주사
예산지원	협의회 활동 및 운영에 따른 경비	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유치 필요경비	협의회 출석한 위원, 전문가, 관계인 등에 필요경비 지급	수당과 여비	출석회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수당 지급